#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82

발의연월일: 2020. 10. 29.

발 의 자:고용진・양정숙・임오경

강병원 · 김병욱 · 김수흥

김영진 · 정성호 · 안규백

김경협 · 노웅래 · 박완주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 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 또는 납세자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이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현행 법상 납세자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납세자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2004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후 17년간 세액공제 금액의 변동없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 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납세자들의 성실납세 지원과 전자신고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세목에 전자신고율이 낮은 양도소득

세를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건당 금액을 법률로 정하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8).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8제1항 전단 중 "소득세"를 "소득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2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만원(「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따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제3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에서 3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2.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

제1항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6 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신고에 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 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액공제) ①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 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해당 납부세액에서 3만원 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 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u>대통</u>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 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 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 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 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 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 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 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
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
122조의3제1항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해당 과세연도의 종
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괴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
<u>업</u>
<u>③</u>
<u>1</u> 만원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u> 2만원)</u>
·

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 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 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 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 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 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 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세무사가 공 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 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 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 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 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 액)은 3백만원(「세무사법」에

<u>4</u>
<u>제1항</u>
<u>또는 제2항에 따른</u>
또는 제2항에 따른
또는 제2항에 따른  제3항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	
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	